

의안	530
번호	531

202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1.
전문위원 김동성

1. 제안경위

- 2025. 11. 12.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회계연도 사업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가. 세입 예산안

1)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일반회계			해당없음	
특별회계				

-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내역이 없으며,

나. 세출예산안

1)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303,303	303,709	△406	△0.13
일반회계	303,303	303,709	△406	△0.13
특별회계	-	-	-	-

2)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2026년도 예 산(안)	2025년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비 고
계	303,303	303,709	△406	△0.13	
◦ 지원중심의 감사 운영	41,450	39,500	1,950	4.94	
◦ 특정민생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	1,220	1,220	0	0.00	
◦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	6,980	6,488	492	7.58	
◦ 인권도시 성북	41,720	30,936	10,784	34.86	
◦ 청렴성북실현	86,563	70,785	15,778	22.29	
◦ 주민불편요인 사전 처리	6,800	5,900	900	15.25	
◦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30,000	28,920	1,080	3.73	
◦ 기본경비	88,570	119,960	△31,390	△26.17	

-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인권도시 성북 및 청렴 성북실현 등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기본경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소한 3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율은 0.13%임.

3) 구조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예산	%	증감액	%
정책사업	214,733	70.80	183,749	60.50	30,984	16.86
행정운영비	88,570	29.20	119,960	39.50	△31,390	△26.17
재무활동	-	-	-	-	-	-

- 이를 구조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2억 1,473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3,098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857만원으로, 3,13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내역이 없음.

3)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사업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 종합·취약부문 감사	구민감시관 운영수당	4,050	2,100	1,950	
◦ 인권도시 성북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19,200	13,440	5,760	
	인권백서 제작	5,000	0	5,000	추가 편성
◦ 인권교육실시	복지시설종사자 등 인권교육	2,820	3,900	△1,080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청렴 모니터링(해피콜) 운영인력	14,100	0	14,100	추가 편성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54,418	55,856	△1,438	
	국내여비	29,952	59,904	△29,952	

3. 검토의견

1) 세입

-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2) 세출

- 예산은 3억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소함.

세출 감소요인은 구민감시관 운영수당 195만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576만원이 증액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청렴 모니터링(해피콜) 운영인력비 1,410만원과 인권백서 제작비 500만원이 추가 편성 된 반면,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43만원과 국내여비 2,995만원 감액이 주요 요인임.

3)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 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